

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 회의(2017.1.16.)

조례·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연번

목 차

1	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4
3	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-	7

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1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1. 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. 13.

2. 개정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,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건축위원회 구성·기능·회의 규정 개정(안 제4조·제6조·제7조)
- 나. 건축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 등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다.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신설(안 제13조의2)
 -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
- 라.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개정(안 제23조)
 - 예치대상: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- 보증기간: 6개월 → 1년
- 마.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(안 제28조의2)
- 바.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기준 신설(안 제35조의2)
- 사.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규정 신설(안 제35조의3)
 - 검사대상: 다중이용 건축물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축물
 - 검사주기: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
- 아.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삭제(안 제40조)
- 자.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(안 제41조의2)
- 차.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 신설(안 제42조의2)
- 카.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규정 신설(안 제42조의3)
- 타.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구체화(안 제43조)
 - 제조·저장시설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것.
- 파. 부속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구체화(안 별표 3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1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1. 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. 13.

2. 제정이유

-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향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1조·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 - 거창군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
- 다.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 -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
 -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
 - 향노화힐링 특구지원 등

라. 향노화산업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- 향노화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·개발
-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
- 향노화산업 관련자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, 상표개발
-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
-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, 판로개척 및 마케팅
-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, 묘목, 농자재, 농기계 등

마. 향노화산업 지원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~ 제12조)

- 기능: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문·지원
- 구성: 20명 이내, 2년 임기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향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향노화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
면제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1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1. 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. 13.

2. 제안이유

-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명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
- 나. 위치: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94-29
- 다. 규모
 - 부지: 450㎡(유상임대: 진산석재 김정철)
 - 건물: 392㎡(준공: 2007. 12. 28.)
 - 시설: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설비 등
 - 사업비: 451백만원(건축물 138, 기계설비 309, 기타 4)

라. 주요 사업내용

- 신기술개발사업 추진
- 검증, 분석업무 수행
-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시험서비스 제공 등

마. 사용·수익허가 계획

- 허가목적: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등
- 사용기간: 2017. 1. 1. ~ 2019. 12. 31.(3년간)
- 허가대상: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
- 허가물건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및 기계설비
- 사 용 료: 면제(군의회 동의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”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우리군이 출자한 비영리법인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거창화강석만의 특화된 제품의 연구·개발과 공동생산·전시 또는 판매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(안)에 대하여 승인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